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관장과 소방안전관리자의 기본 책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범위, 업무수행 절차 및 관리·감독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규모·용도·이용자 특성 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보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고,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범위·방법, 대행인력 기준, 기록관리 등에 관한 세부 기준도 미비하여 기관별 운영 편차와 책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의 적용대상과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기관장·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역할과 책임을 체계화하며, 선임·신고·교육·훈련·업무대행·화기취급 감독 등 세부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의 실효성과 현장 집행력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및 용어 명확화

-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거나 계약 등에 따라 점유·사용하면서 소방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공공특정소방대상물”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사립학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기관장 등의 책무 강화

- 기관장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소방계획 수립·시행, 소방훈련·교육 등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도록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등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보조자 제도 정비

-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규모·용도·화재위험성·근무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라. 선임신고 및 선임 유예 절차 마련

- 소방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공공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폐쇄하거나 사용 중지하여 근무자 및 이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임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기준 구체화

-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기관장이 대행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대

행인력의 자격기준, 배치기준, 업무수행 방법 및 준수사항을 별표로 정함.

바. 자위소방대 운영 및 소방훈련·교육 체계 정비

-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과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사. 화기취급 감독 등 화재예방 조치 강화

- 공공기관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관장이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사전에 소방안전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을 받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6. 3. 3. ~ 4.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부 소유하면서 점유·사용(일부 점유·사용을 포함한다)하는 것
2. 공공기관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소유·관리하는 것. 이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 해당한다.
3. 계약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전부 점유·사용하면서 소방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공공기관의 범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제5조(기관장 등의 책무) 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②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제7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를 선임하고, 그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등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 등) ① 기관장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명 이상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별 자격 기준은 영 별표 4에 따른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부서의 책임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영 별표 4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2.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기관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사람이 선임 전에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영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

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하도록 하고, 수료증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선임 전까지 강습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임시켜 선임할 수 있다.

⑤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으로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7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기관장은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화재위험성, 근무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1명 이상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

람

3. 법 제3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4.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

제8조(소방안전관리자등의 선임절차 등)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절차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기관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등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7조각 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해야 한다.

제9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유예) ① 기관장은 공공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폐쇄 또는 사용 중지하여 근무자 및 이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6조 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등의 선임을 유예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등의 선임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유예 신청서에 시설 폐쇄나 사용 중지 등 유예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① 기관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을 말한다)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의 대행인력의 자격기준, 배치기준, 업무수행 방법 및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대행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기관장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기관장과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24조제5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관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의 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선임 지연 등의 사유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기간에도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소방관리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해야 한다.

④ 기관장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에 대한 조치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해야 하며, 대행업무 외의 소방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한다.

제12조(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명령 등) ① 기관장이 제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을 하지 않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관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제1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안전관리자등의 교육)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등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① 기관장은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피난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25조제5항 및 제36조에 따른다.

제15조(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시 근무 인원이 1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 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기관장은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며 출입이 제한되어 무인(無人)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비상시에 대비한 소방훈련만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화기취급의 감독) ① 기관장은 공공기관에서 증축, 개축, 실내건축 또는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설비 등과 관련한 공사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사 또는 작업 관계인에게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 또는 불꽃·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방안전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실(室)이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경우 해당 실의 사용책임자는 그 공간에서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제7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차목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바목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로 한다.

[별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1. 업무대행의 범위

- 가. 업무대행의 범위는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에 따른다.
- 나. 기관장과 관리업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세부 업무대행 범위를 정하되, 표 3에 따른 점검표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법인 또는 단체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 라. 기관장과 관리업자 간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기관장 또는 관리업자는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 사실 확인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업무대행 인력의 자격기준

- 가. 대행인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 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별표 4의2 제3호 다목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에 따른다.

3. 업무대행 인력의 배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이하 “대행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해야 한다.

-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및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

[표 1]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3.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대행인력 1명의 1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업무량은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표 2]에 따라 산정한 배점으로 하고, 공공특정소방대상물 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배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날 동일한 대행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량은 모두 합산하여야 하며, 합산한 배점은 8점을 초과할 수 없다.

[표 2]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면적별 배점기준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연면적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초급점검자	중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이상
3급	전체	0.7		
특급, 1급 또는 2급	1,500㎡ 미만	0.8	0.7	0.6
	1,500㎡ 이상 3,000㎡ 미만	1.0	0.8	0.7
	3,000㎡ 이상	1.2	1.0	0.8

	5,000m ² 미만			
	5,000m ² 이상 10,000m ² 미만	1.9	1.3	1.1
	10,000m ² 이상	-	1.6	1.4

비고

1. 주상복합아파트의 연면적은 세대부를 제외한 연면적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다만, 환산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연면적 범위를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본다.

가.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수에 32를 곱하여 계산한 값

나. 작동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수에 40을 곱하여 계산한 값

2. 터널, 지하구의 연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 터널의 경우: 터널의 길이에 폭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나. 지하구의 경우: 지하구의 길이에 폭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다. 하루에 2개 이상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간의 이동거리(좌표 최단거리를 말한다) 5킬로미터 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뺀다. 다만, 육지와 도서지역 간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없는 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라. 2명 이상의 대행인력이 함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 2]의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하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마. 별표 2 제1호 및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표 2]의 배점에 1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4. 업무대행의 방법 및 점검표

가. 소방시설 점검 시에는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하거나 오동작한 경우에는 해당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도 점검하여야 한다.

나. 방문 점검 시 내부 공사(건축, 설비 등) 또는 내부 구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

- 에는 즉시 이동하도록 기관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라.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마. 점검 완료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기관장)에게 점검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대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기관장)에게 알리고, [표 3]에 기록하여야 한다.
- 바. 제8조에 따라 관리업자는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월 2회 이상, 1급, 2급, 3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월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표 3]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관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분야에 대한 업무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 사. 관리업자 또는 대행인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아. 기관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표 3]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점검일 기준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표 3]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건물명		점검일	년 월 일(요일)
주 소			
점검업체명		건물등급	급
설비명	점검결과 세부 내용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			
기타			

확인자	기관장(소방안전관리자) (서명)
기술인력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대행인력: (서명)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유예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대상	대상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대상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유예 기간				
	유예 사유				

화재안전조치	건축물 사용	
	출입 조치	
	전기 시설	
	가스 시설	
	기타 사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등의 선임을 유예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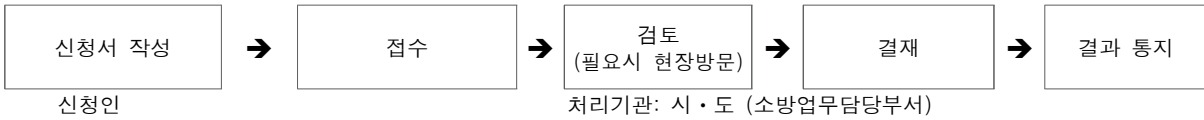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제출서류	공공기관 전체를 폐쇄하거나 사용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7443